##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1053 제출연월일: 2024. 6. 27.

제 출 자:정 부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수급권자, 수급자,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 조사 결과를 시·도지사에게 '보고'하도록 하고 시·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'보고'하도록 하던 것을, 앞으로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시·도지사에게 '통보'하도록 하고 시·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'통보'하도록 하고 시·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'통보'하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##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 제목 "(조사 결과의 보고 등)"을 "(조사 결과의 통보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"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"을 "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를 받은"으로, "보고하여야 한다"를 "통보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조사 결과의 보고 등) 제	제25조(조사 결과의 통보 등)
22조, 제23조, 제23조의2 및 제	
24조에 따라 시장・군수・구청	
장이 수급권자, 수급자, 부양의	
무자 및 차상위계층을 조사하였	
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	
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·도지	
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	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
<u>받은</u> 시·도지사는 이를 보건복	를 받은
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	
의 장에게 <u>보고하여야 한다</u> . 시	<u>통보하여야 한다</u>
•도지사가 조사하였을 때에도	
또한 같다.	